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 : ①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5. 4. 2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3. 16. 기준</u> <u>2025. 2. 28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 (연평균수익률)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16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2. 28.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2. 28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2. 28. 기준</u>
13.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 항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3. 16. 기준</u> <u>2025. 2. 28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 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 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 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

		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〈신 설〉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	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<u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 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--	--	--	--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16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16. 기준</u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5. 3. 16. 기준</u>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2. 28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2. 28. 기준</u>